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신한 비엔피 파riba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투자신탁 제2호[주식]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한 비엔피 파riba 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12년 02월 2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2년 04월 04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 또는 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6. 집합투자업자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과세에 관한 사항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

제4부 요약 재무정보

1.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투자신탁 제2호[주식]	55855
종류 A	55856
종류 A2	64921
종류 A-u	28526
종류 C	93085
종류 I	65249
종류 A-H	97167
종류 A-u2	A3062

2. 모집예정기간 :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원까지 모집 가능하며, 1조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의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전환형(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한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정식투자설명서의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신한 비엔피 파riba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18, 19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bnppam.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의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자산 유형	투자비율 (신탁재산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주식	60%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중국 국내시장(Shanghai, Shenzhen) 및 역외시장(Hong Kong, New York)에 상장된 중국 회사의 주식 또는 주요 수익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에 한한다]
2. 채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은 **중국 관련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 및 중국주식이 거래되는 여러 증권시장에 존재하는 투자 기회 등을 고려하여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중국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고 40%이하를 한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AA-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중국관련 주식** 등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시점을 기준으로 홍콩 달러 또는/그리고 미 달러화 등으로 거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전략이 변경될 수 있는 이 투자신탁은 중국 위안화로 표시된 중국관련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자 관련하여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위험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부분 환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사전적으로 검증된 투자 Universe(종목후보군) 종목 투자여부 점검
- 상품유형별, 펀드별 운용자산 만기분포 분석
- 특정업종 및 종목의 집중편입여부 점검 및 통제
- 보유 종목의 시장 유동성 모니터링 등

(4)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홍콩 달러화, 미국 달러화 및 중국 위엔화 등의 외화로 거래되는 **중국 관련 주식**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투자신탁은 외화자산의 유동성과 헤지비용을 고려하여 해외주식의 미국 달러화 환산 조정가액 기준 80% 수준을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의 변동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코자 합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MSCI China 10/40(USD) x 95%) + (콜금리x5%)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해당 지역 주식시장 성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MSCI China 10/40를 95% 비중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잔여재산의 대부분을 **단기대출(콜론)** 등의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므로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콜금리**를 비교지수의 5% 비중으로 적용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내부 비교지수 선정 기준의 변경으로 해당 펀드의 비교지수는 2009년 5월 4일부터 아래의 지수로 적용되었습니다.

- 설정일 이후 ~ 2009년 5월 3일 : MSCI China (USD) 10/40x 90% + 콜금리x10%
- 2009년 5월 4일 이후 : MSCI China(USD) 10/40 x 95% + 콜금리 x5%

※ MSCI China 10/40

MSCI 지수는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가 최대주주인 MSCI Barra 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투자지표입니다. 중국 주식 시장 성장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MSCI China 지수로부터 산출되는 지수입니다.

(MSCI 10/40 지수: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을 단일 자산에 투자할 수 없는 게 특징임. 또 포트폴리오의 5%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규모의 총합이 포트폴리오 규모의 4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만들어진 투자지표임.)

※ 콜금리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며, 이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 합니다.

동 펀드의 비교지수는 미국 달러화(USD)에 대하여 100% 환헤지를 가정한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동 펀드는 미국 달러화(USD)에 대하여 80% 수준의 목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기에, 비교지수는 미국 달러화(USD)에 대하여 80% 환헤지를 가정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동 펀드의 환헤지 전략은 항상 8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외환시장의 변동에 대응하여 평균적으로 80% 수준의 환헤지 실행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화(USD)에 대하여 80% 환헤지를 가정한 인덱스를 비교지수로 적용하더라도 동 펀드의 환헤지 실행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미국 달러화(USD)에 대하여 100% 환헤지를 가정한 인덱스를 펀드의 비교지수로 설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교지수의 성과와 펀드의 실제 성과의 차이에는 비교지수의 환헤지 비율과 실제 환헤지 비율의 차이로 인한 성과 차이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주된 투자대상인 중국 관련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또한 주된 투자대상인 중국 관련 주식 등은 외국통화로 거래되기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 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주식 및 채권 등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중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중국 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을,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위험을 축소하고자 이 투자신탁에서는 미 달러화 대비 원화의 변동에 대해 부분환헤지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들에 의해

	부분환헤지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헤지하는 금액: 이 금액은 투자대상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 자산배분의 변화,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이나 부분 환매 또는 외국통화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 등으로 인해 매일 변할 수 있습니다. 2. 헤지할 통화의 유동성 및 헤지 비용 3. 외환시장의 붕괴 또는 일상적인 통제수준을 넘는 외환시장의 충격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나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곤란한 경우 4. 관련 법령 제한 또는 규제 변화 등 5. 선물환거래 상대방의 부도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해당 펀드를 각 위험 별로 평가한 후 총괄하여 원본손실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 1등급, 높은 경우 2등급, 중간수준인 경우 3등급, 낮은 경우 4등급, 아주 낮은 경우 5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중국 관련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5개의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중국관련 주식등과 관련된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 원본 전체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 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 신한 비엔피 파riba 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예시>

위험등급	대상 펀드
1등급	- 주식 등에 최소 60% 이상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80% 미만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자산의 9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 주식 등에 최대 50% 이상까지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80% 이상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자산의 9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 주식 등에 최대 50% 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자산의 9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으며, 국공채, A-이상 회사채/금융채/특수채 등에 총자산의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 유동성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국공채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MMF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6.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2011. 04. 15. 현재)

①책임투자운용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추문성	1958	이사	8개	1조7,852억원	신한은행 기획조사부 경제 및 금융시장 조사 (89.11~93.01) 신한은행 국제부 해외투자 및 외화자금 관리 (93.02~98.04) 신한 BNP 파riba투신 리서치팀장 (00.10~04.11) 신한 BNP 자산운용 해외운용본부장 (04.12~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 운용역이 책임투자운용역입니다.

주2)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3) 책임투자운용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운용인력]

이 투자신탁의 해외자산운용은 비엔피 파riba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아시아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Asia Limited) 입니다. 운용은 팀운용으로 이루어지며 책임투자운용인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5월 3일 기준)

성명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Patrick Ho	80억 달러 (2010.02 기준)	총 경력 15 년 (BNPP IP Asia (Fortis Investments 합병) 4 년) 2010.01~현재 BNPP IP Asia, 아시아 주식 부문 총괄

		2008~2010.01 Fortis Investments Hong Kong, CIO (아시아 주식 부문) 2005~2008 ABN AMRO AM Hong Kong, 홍콩 및 중국주식 부문 총괄 2004~2005 Franklin Templeton China Hong Kong, 리서치 총괄 1997~2004 ABN AMRO AM Asia, 포트폴리오 매니저 (구조화자산 운용팀) 1994~1997 Grantham Mayo Van Otterloo&Co, 시니어 퀀트 애널리스트
--	--	--

7.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2011.04.15 현재/단위: %

구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종류 A	2006.04.04	7.15	18.69	0.49	11.09	10.86
종류 A2	2007.02.05	7.21	18.74	0.54	-	6.59
종류 I	2007.02.13	7.84	19.44	1.15	-	6.54
비교지수	2006.04.04	8.26	22.77	6.23	16.62	1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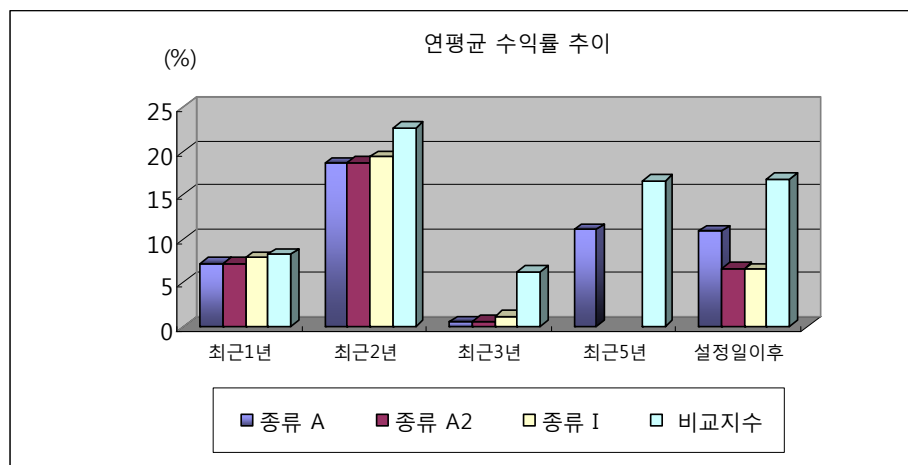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설정일 이후~ 2009년 5월 3일 : MSCI China 10/40(USD)*90% + CALL 지수*10%

*2009년 5월 4일 이후 : MSCI China 10/40(USD)*95% + CALL 지수*5%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2011.04.15 현재/단위: %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A	2006.04.04	7.15	40.86	1.48	23.54	69.24
종류 A2	2007.02.05	7.21	40.99	1.64	23.77	-
종류 I	2007.02.13	7.84	42.66	3.49	26.77	-
비교지수	2006.04.04	8.26	50.72	19.88	50.55	115.78

(주1) 비교지수 :

*설정일 이후~ 2009년 5월 3일 : MSCI China 10/40(USD)*90% + CALL 지수*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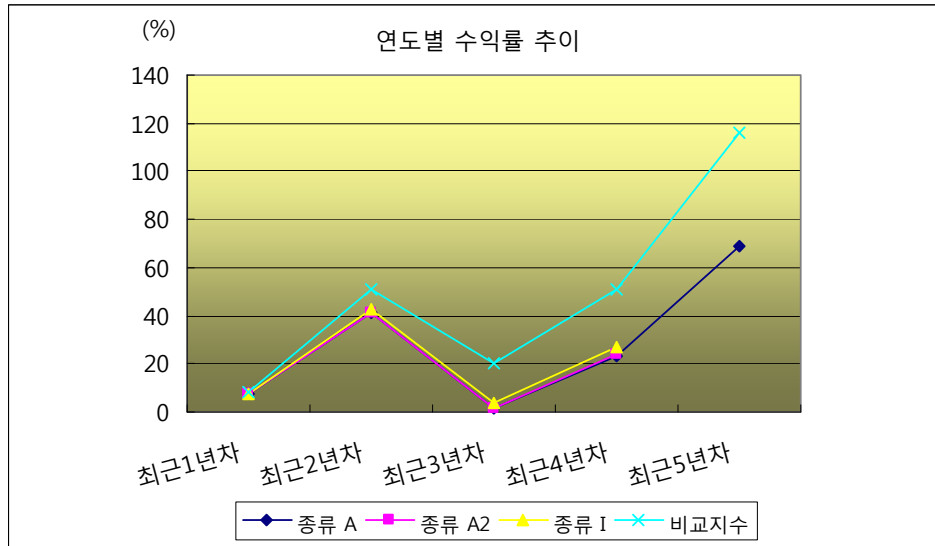
*2009년 5월 4일 이후 : MSCI China 10/40(USD)*95% + CALL 지수*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단순 누적 수익률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의 변동추이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설정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기간	수익률 기재 방식
6개월 미만	기재하지 않습니다.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기간 수익률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연환산수익률



제3부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A	2006.04.04	제한없음
종류A-H	설정전	장기주택마련저축 전용 수익증권
종류A2	2007.02.05	신규 또는 추가 납입금액 10억원 이상
종류 A-u	2010.08.10	제한없음
종류C	2010.11.10	신규 또는 추가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종류I	2007.02.13	집합투자기구/또는 일임형립계좌보유자
종류 A-u2	설정전	제한없음

* 위 종류 수익증권들은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 판매회사를 통해 전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3부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 (2) 매입 및 환매 절차 5)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종류A	납입금액의 1.0%	-
종류A-H	납입금액의 1.0%이내 ¹⁾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종류A2	납입금액의 0.5%	-
종류 A-u	납입금액의 0.9%이내 ¹⁾	30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종류C	-	90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종류I	-	
종류 A-u2	납입금액의 0.98%이내 ¹⁾	30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1) 납입금액의 1.0%(종류 A-H), 0.9%(종류 A-u), 0.98%(종류 A-u2)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종류)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업 자보수	판매회사보 수	신탁업자보 수	일반사무관 리보수	기타비용 ¹⁾	총보수 및 비용 ⁵⁾	증권거래비 용 ²⁾
종류A	0.7800	0.7500	0.0500	0.0200	0.0289	1.6289	0.1114
종류 A-H	0.7800	0.7200	0.0500	0.0200	-	1.5700	-
종류 A2	0.7800	0.7000	0.0500	0.0200	0.0286	1.5786	0.1064
종류 A-u	0.7800	0.7500	0.0500	0.0200	0.0248	1.6248	0.0974
종류 C	0.7800	0.6500	0.0500	0.0200	0.0256	1.5256	0.1025
종류 I	0.7800	0.1000	0.0500	0.0200	0.0287	0.9787	0.1118
종류 A-u2	0.7800	0.7700	0.0500	0.0200	-	1.6200	-
지급시기	매 3 개월 후금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투자신탁 별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약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

(주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종개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등

(주3)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0.04.04 - 2011.04.03]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167	521	898	1,954

종류 A2	162	503	868	1,889
종류 A-u	167	519	896	1,952
종류 C	160	499	861	1,878
종류 I	100	312	538	1,170
종류 A-H	161	502	866	1,891
종류 A-u2	166	518	893	1,947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단, 선·후취 판매수수료는 제외)..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수익률은 5%,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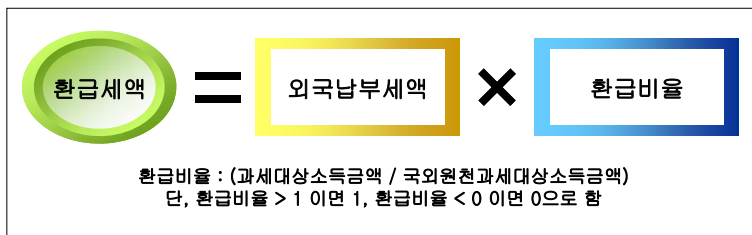
주2) 자투자신탁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 반영을 위해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3) 해외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상당히 낮아질 경우 해외 자산 매매 및 보관 등을 위한 기타 비용(해외보관대리인 비용, 해외거래예탁비용 등)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과세에 관한 사항 (과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류 A-H 수익증권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전용 수익증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 년 1 월 1 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종류 A-H 수익증권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1) 가입자격: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9항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세대”라 함)의 세대주

2.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가입한도: 분기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합계액).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습니다.

3) 가입시한: 2012년 12월 31일

4) 세제혜택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만 해당)

: 7년 이상 저축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단, 해당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5) 세액추징

: 이자소득세 추징 -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7년 이내 해지시 감면받은 이자소득세 전액 추징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해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

①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②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I. 천재·지변

II. 저축자의 퇴직

III. 사업장의 폐업

IV.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V.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도 이자수익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주1)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환매 및 전환 절차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A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 A2: 신규 또는 추가 납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자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 C : 신규 또는 추가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 I : 집합투자기구 또는 일임형 랩계좌를 보유한 자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 A-u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 A-H : 장기주택마련저축 전용 수익증권,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1 조 제 9 항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세대”라 함)의 세대주
 2.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종류 A-u2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통해 매입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함)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환매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5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6 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5)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 ① 각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에서 그 외 종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② 수익증권의 전환 청구는 최초 매수일로부터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각 종류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 ③ 집합투자규약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청구 시, 전환 청구 수익증권의 집합투자규약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이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 보다 낮을 경우 판매회사는 해당 선취판매수수료율의 차이만큼을 전환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차이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⑤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전환 관련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6) 펀드 간 전환 (엠브렐라 클래스 펀드 간의 전환)

가. 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은 전환형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대상 투자신탁>

1. 종류 A-u : 신한 BNPP 엠브렐라 클래스 펀드

	펀드명
1	신한 BNPP BEST 개인용 MMF 제 1 호
2	신한 BNPP BEST CHOICE 단기 증권 투자신탁 제 4 호[채권]
3	신한 BNPP 좋은아침 희망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4	신한 BNPP Tops Value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5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제 2 호[주식]
6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7	신한 BNPP 봉쥬르 브릭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8	신한 BNPP 커머더티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채권-파생형]

상기 집합투자증권 중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종류 A-u2 : 신한 BNPP 엠브렐라 클래스II 펀드

	펀드명		펀드명
1	신한 BNPP BEST 개인용 MMF 제1호	13	신한 BNPP 봉쥬르 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2	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1호	14	신한 BNPP 봉쥬르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3	신한 BNPP BEST CHOICE 단기 증권 투자신탁 제4호[채권]	15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4	신한 BNPP 3대그룹주 Plus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16	신한 BNPP 봉쥬르 유럽배당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5	신한 BNPP Tops Value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17	신한 BNPP Tops 일본 대표기업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6	신한 BNPP 좋은아침 희망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18	신한 BNPP 포커스 농산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7	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투자신탁[주식]	19	신한 BNPP 커머더티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8	신한 BNPP 좋은아침 펀더멘탈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20	신한 BNPP 포커스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9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	21	신한 BNPP 에너지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10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오퍼튜니티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22	신한 BNPP 골드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11	신한 BNPP 봉쥬르 동남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23	신한 BNPP 탑스 글로벌 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재간접형]
12	신한 BNPP 봉쥬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상기 집합투자증권 중 종류 A-u2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전환 절차 및 방법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처리 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① 신한 BNPP BEST 개인용 MMF 제1호, 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1호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D)	제2영업일(D+1)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 일 및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 일 및 전환일		

- ② 신한 BNPP BEST CHOICE 단기 증권 투자신탁 제4호[채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D)	제2영업일(D+1)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영업일 구분
----	----------	------------	------------	------------	--------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 일 및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 일 및 전환일	

- ③ 신한 BNPP 3대그룹주 Plus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신한 BNPP Tops Value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신한 BNPP 좋은아침 희망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투자신탁[주식], 신한 BNPP 좋은아침 펀더멘탈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D)	제2영업일(D+1)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영업일 구분
15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15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 ④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3영업일 (D+2)	제4영업일 (D+3)	제5영업일 (D+4)	제6영업일 (D+5)	영업일 구분
15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5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 ⑤ 신한 BNPP Tops 일본 대표기업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3영업일 (D+2)	제4영업일 (D+3)	제8영업일 (D+7)	제9영업일 (D+8)	영업일 구분
15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5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 ⑥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오퍼튜니티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5영업일	제6영업일	영업일 구분
----	-------	-------	-------	-------	-------	--------

	(D)	(D+2)	(D+3)	(D+4)	(D+5)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 ⑦ 신한 BNPP 봉주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신한 BNPP 포커스 농산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3영업일 (D+2)	제4영업일 (D+3)	제6영업일 (D+5)	제7영업일 (D+6)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 ⑧ 신한 BNPP 탑스 글로벌 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3영업일 (D+2)	제4영업일 (D+3)	제8영업일 (D+7)	제9영업일 (D+8)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 ⑨ 신한 BNPP 봉주르 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H)[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D)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제8영업일(D+7)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 ⑩ 신한 BNPP 봉주르 유럽배당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제4영업일	제5영업일	제6영업일	제7영업일	영업일 구분
----	-------	-------	-------	-------	-------	--------

	(D)	(D+3)	(D+4)	(D+5)	(D+6)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 ⑪ 신한 BNPP 골드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 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4영업일 (D+3)	제5영업일 (D+4)	제8영업일 (D+7)	제9영업일 (D+8)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 ⑫ 신한 BNPP 봉쥬르 브릭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신한 BNPP 봉쥬르 동남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신한 BNPP 봉쥬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신한 BNPP 봉쥬르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신한 BNPP 포커스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4영업일 (D+3)	제5영업일 (D+4)	제9영업일 (D+8)	제10영업일 (D+9)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 ⑬ 신한 BNPP 커머더티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신한 BNPP 에너지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5영업일 (D+4)	제6영업일 (D+5)	제8영업일 (D+7)	제9영업일 (D+8)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다. 전환시 유의사항

- 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 전환시 및 전환후 수익자가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수익자는 투자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신청할 수 있으나, 판매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1)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부 요약 재무정보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 기(2010.04.04 - 2011.04.03)	안진회계법인	적정
제 4 기(2009.04.04 - 2010.04.03)	안진회계법인	적정
제 3 기(2008.04.04 - 2009.04.03)	안진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통합 대차대조표			
항 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11.04.03)	(2010.04.03)	(2009.04.03)
운용자산	3,108,516,442,704	3,437,912,247,859	2,608,761,859,772
증권	3,049,080,233,518	3,305,605,723,998	2,474,266,410,06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9,436,209,186	132,306,523,861	134,495,449,70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3,264,358,604	83,420,035,686	86,329,669,655
자산총계	3,181,780,801,308	3,521,332,283,545	2,695,091,529,42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5,409,611,692	34,520,647,297	25,747,275,956
부채총계	35,409,611,692	34,520,647,297	25,747,275,956
원본	3,185,321,952,899	3,798,337,341,934	4,042,563,704,655
수익조정금	-5,834,055,700	-77,431,634,777	105,598,412,193

이익잉여금	-33,116,707,583	-234,094,070,909	-1,478,817,863,377
자본총계	3,146,371,189,616	3,486,811,636,248	2,669,344,253,471

[단위 : 원, %]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10.04.04 - 2011.04.03)	(2009.04.04 - 2010.04.03)	(2008.04.04 - 2009.04.03)
운용수익	279,027,781,835	1,111,791,443,749	-1,425,197,917,955
이자수익	4,280,251,512	5,095,076,262	13,669,625,362
배당수익	74,161,853,610	68,258,618,726	88,775,098,033
매매/평가차익(손)	200,585,676,713	1,038,437,748,761	-1,527,642,641,350
기타수익	0	936,436	0
운용비용	50,086,404,507	53,985,009,096	51,353,043,159
관련회사 보수	49,563,238,107	53,505,542,496	50,844,159,159
매매수수료	523,166,400	479,466,600	508,884,000
기타비용	262,058,084,911	1,291,901,441,998	2,266,902,263
당기순이익	-33,116,707,583	-234,094,070,909	-1,478,817,863,377
매매회전율	34.51	63.85	59.22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 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